

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 세무담당부서(장)

제 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대통령령 제31383호(2021.01.12.)로 일부 개정·공포된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의 일부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본 내용은 우리 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 「법령 제·개정 자료실」에서도 확인 가능하며, 개정법률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(www.moleg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개정내용

- 소비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.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
- 기본 개별소비세율(5%)과 탄력세율 적용 개별소비세율(3.5%)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적용.

□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 변동

구 분	개 정 내 용
규 정	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(탄력세율)
감면한도	기본세율로 산출된 개별소비세액과 탄력세율로 산출된 개별소비세액에 서의 차액 100만원 한도 적용

*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

※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한도액 적용 예시

[단위 : 원]

구 분	쏘나타		K7		제네시스 G80		제네시스 G90	
배 기 량	2.0		3.0		3.5		3.8	
공급가액	24,500,000		37,000,000		70,000,000		100,000,000	
일반세율 적용	5%	1,225,000	5%	1,850,000	5%	3,500,000	5%	5,000,000
탄력세율 적용	3.5%	857,500	3.5%	1,295,000	3.5%	2,450,000	3.5%	3,500,000
차액(감면된세액)	-	367,500	-	555,000	-	1,050,000	-	1,500,000
감면적용 계산식	감면된 세액이 100만원이하일 때 전액 감면		감면된 세액이 100만원이하일 때 전액 감면		2,450,000 +(1,050,000-1,000,000)		3,500,000 +(1,500,000-1,000,000)	
납부세액	857,500		1,295,000		2,500,000		4,000,000	

※ 붙임 :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법률안(발췌) 1부. “끝”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

수신자 : 회원사 전체

주임	부장	실장	상무	이사장
담당자 박종우	김진석	박상광	성정현	최장순
시행	서자대조21-30	(2021.01.12)	접수	- ()
우	0670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(방배동, 프린스효령빌딩 2층)	/ www.scra.or.kr		
전화	(02) 525-9082	전송	(02) 525-9063 /	scra@scra.or.kr / 공개

[붙임]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법률안(발채)

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(제2조의 2)

○ 개정이유

1. 소비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.5퍼센트로 30퍼센트 이하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
2. 자동차 등 고가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.

<신·구 대비표>

종 전	개 정 후
제2조의2 [탄력세율]	제2조의2 [탄력세율]
① <u>법 제1조제7항</u> 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 <u>법 제1조제7항 본문</u> ----- ----- -----
1.~5. (생략)	1.~5. (현행과 동일)
6.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: <u>해당</u> 물품 가격의 1천분의 35	6. <u>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: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</u>
<②항 신설>	② <u>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</u>

<기존 ②항 → ③항으로 이동>	<u>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.</u>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(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할 때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 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[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(이하 "국세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]하여야 한다. 1.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. 반출 장소 3.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. 그 밖의 참고사항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부 칙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)

- ① 제2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-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)

제2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

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)

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(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 분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.